

목 차

| | |
|---|-----|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4 |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4 |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4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5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5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7 |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7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7 |
| III. 경영참고사항 | 8 |
| 1. 사업의 개요..... | 8 |
| 가. 업계의 현황 | 8 |
| 나. 회사의 현황 | 10 |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12 |
| □ 재무제표의 승인..... | 12 |
| □ 이사의 선임..... | 132 |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133 |
| □ 정관의 변경..... | 133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137 |
| ※ 참고사항..... | 138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 년 2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신세계
대 표 이 사 : 장재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
(전 화) 02-727-1921
(홈페이지)<http://www.shinsega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주)신세계 재무담당 (성 명) 김 대 호
(전 화) 02-727-192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2기 정기)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시 : 2019년 3월 15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2
(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일지점 4층 대강당

3. 보고사항 : 가) 감사보고 나)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다) 영업보고
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마)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4.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62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재영)
 -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안영호)
 - 제 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원정희)
 - 제 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위철환)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안영호)
 - 제 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원정희)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님의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19년 3월 5일 ~ 2019년 3월 14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7.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안영호 (출석률: 100%) | 김영걸 (출석률:71%) | 김주영 (출석률:93%) | 박윤준 (출석률: 86%) |
| | | | 찬 반 여 부 | | | |
| 1회 | 2018.01.18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회 | 2018.01.24 | 까사미아 지분 인수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3회 | 2018.01.30 | 제6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제6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회 | 2018.02.26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회 | 2018.03.16 | 제6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2분기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회 | 2018.04.10 | 대전신세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회 | 2018.06.09 | 신세계디에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회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2018년 3분기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6월14일 박윤준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안영호 (출석률: 100%) | 김영걸 (출석률: 71%) | 김주영 (출석률: 93%) |
| | | | 찬 반 여 부 | | |
| 8회 | 2018.07.10 | 대전신세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장기차입금 조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9회 | 2018.07.18 |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0회 | 2018.09.11 | 신세계디에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2018년 4분기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1회 | 2018.10.31 |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 분할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신주 인수계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2회 | 2018.11.14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건 추가상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
| | | | 안영호 | 김영걸 | 김주영 | 최진석 |

| | | | (출석률: 100%) | (출석률: 71%) | (출석률:93%) | (출석률: 100%) |
|-----|------------|--------------------------------|-------------|------------|-----------|-------------|
| | | | 찬 반 여부 | | | |
| 13회 | 2018.12.18 |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 | 2019년 1분기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 | 찬성 | 찬성 |
| 14회 | 2018.12.27 | 분할보고총회 공고 승인의 건 | 찬성 | - | - | 찬성 |

※ 2018년 12월18일 최진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장재영(위원장), 김정식, 안영호, 김영걸, 박윤준 | 2018.02.26 | - 사외이사후보 추천 | 가결 |
| | 장재영(위원장), 김정식, 안영호, 김영걸 | 2018.11.12 | - 사외이사후보 추천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안영호(위원장), 김주영 | 2018.10.31 | - 분더삼 청담 영업시설 설치공사 | 가결 |
| | 안영호(위원장), 김정식, 김주영 | 2018.12.18 | -신세계 ERP 시스템 관리 용역 계약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 박윤준(위원장), 안영호, 김주영 | 2018.01.30 | - 61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 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박윤준(위원장), 안영호, 김주영 | 2018.02.26 | - 제 61기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 보고 |
| | | | - 제 61기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 보고 |
| | | | - 제 61기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회계, 업무 감사 결과 | 보고 |
| | 박윤준(위원장), 안영호, 김주영 | 2018.03.16 |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김주영(위원장), 안영호 | 2018.07.10 |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 -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 보고 |
| | 김주영(위원장), 안영호 | 2018.12.11 | - 외부감사인 감사진행 경과 보고 | 보고 |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및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제정의 건 | | | 가결 | |
| 김주영(위원장), 안영호, 최진석 | 2018.12.18 |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

※ 2018년 6월14일 박윤준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2018년 12월18일 최진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0,000 | 62 | 62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154 | 51 |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총 7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동법 시행령 제 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 ※ 2018년6월 14일 박윤준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임차료 | (주)센트럴시티 | 2018.01 ~ 2018.12 | 870 | 5.2% |
| 임대수입 | (주)신세계디에프 | 2018.01 ~ 2018.12 | 337 | 2.0% |
| 임차료 | (주)스타필드하남 | 2018.01 ~ 2018.12 | 198 | 1.2% |
| 서비스수수료 | (주)신세계페이먼츠 | 2018.01 ~ 2018.12 | 187 | 1.1%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주)이마트 | 자재/임차료 등 | 2018.01 ~ 2018.12 | 1,238 | 7.4% |
| (주)센트럴시티 | 임차료 등 | 2018.01 ~ 2018.12 | 878 | 5.3%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백화점사업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은 대형판매시설을 통해 다양한 상품구성과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첨단 유행을 선도하는 업태입니다. 판매시설 이외에도 식당가, 시네마, 문화센터 등 서비스 시설 및 다양한 문화 강좌와 각종 이벤트로 도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재한 입지의 상권규모, 교통환경, 경쟁점포 현황,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각 점포 및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기 확보된 영업 점포의 경우 경쟁점 출점을 제외하고는 입지여건 변동에 따른위험 변동성은 낮습니다.

또한 부지확보 및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신규 출점시 기존점포의 견제, 판촉비 부담 등으로 초기 진입비용이 타 업태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백화점업계는 지방 소재 중견기업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상당수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M&A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후 상위업체 중심으로 신규출점 및 증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이처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상권 내 Leading Store로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소 백화점의 인수/합병 및 경영체휴 등을 통한 시장 재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다른 유통업태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형태로의 진화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백화점 업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유통채널간 경쟁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 등의 新 백화점 모델, 온라인 채널 확대, 新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도입, 차별화된 MD를 통해 30조 이상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백화점 매출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매출액 | 30.0 | 29.3 | 29.9 |
| 신장율 | 2.3% | ▲2.0% | 3.0% |

- 자료출처 : 통계청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내수산업으로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며, 국내 경기변동, 특히 민간 소비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리,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 등의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품목인 의류, 잡화 등 고마진 상품은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비교적 개별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상품의 판매, 바겐세일, 사은행사등의 영향으로 4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요소

점포망 구축과 브랜드 충성도 확보를 위해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사업특성상 국내외 잠재 기업의 시장 진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며, 대체품의 성격을 지닌 고급전문점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백화점업계는 잠재적 진출기업이나 대체재에 의해 경쟁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백화점업계는 일부 상위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 구매협상력, 전국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 양질의 상권에 시장선점을 통해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백화점들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최근에 등장한 해외직구, 온라인, 아울렛 등의 신 유통업태의 성장에 따라 백화점업계는 업계내의 외형 경쟁만으로는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화 전략에 취약했던 지방 백화점들은 온라인, 아울렛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 업계는 소비양극화 및 가치소비(본인의 가치를 높이고 본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 고가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형태) 트렌드에 기반한 수요측면의 변화와, 성숙기 시장에 대비한 고객관리 강화 및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인 복합쇼핑몰 개발,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부문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해외 백화점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백화점 업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동시에,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다양한 소싱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명품브랜드 입점 등 고소득층에 대한 마케팅 강화, 20~30대 신규 고객을 위한 트렌디 MD 보강으로 매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쇼핑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백화점으로써 타 유통업태보다 넓은영역에서 경쟁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 구분 | 내용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
| 주차장법 |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

| | |
|-----------------------|--|
| 유통산업 발전법 | <p>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 포를 개설하고자 하는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p> <p>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제한 가능 또한 대규모점포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함.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원칙</p>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p>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 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p>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2018년 회사는 매출액 1조7,393억원, 영업이익은 2,423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세계 미래성장의 핵심 사업이 될 강남증축과 센텀시티몰, 김해점, 하남점, 대구점의 성공적 오픈으로 압도적 상권 1번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외에도 신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업무 프레임을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업의 본질인 고객·상품·브랜딩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단순 유통기업을 넘어 고객의 삶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문화·패션·트렌드 등 유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점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지속적인 신규점포 개발, 유통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추이

| 구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백화점 시장규모 | 299,852 억원 | 293,242 억원 | 299,114 억원 |
| 신 세 계 시장점유율 | 28.2% | 26.9% | 22.2% |

- 자료출처 : 통계청 및 당사자료

- 당사자료는 총판매액(임대매장 판매액 포함) 기준

- (주)신세계가 운영하는 백화점 외에 계열회사인 (주)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위탁운영중인 신세계충청점 등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함

(3) 시장의 특성

회사는 고소득 계층이 밀집해 있는 상권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삼아 전국에 총 12개 점포(위탁경영중인 신세계충청점, (주)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 (주)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포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격 이미지의 백화점으로써 입지를 강화하여 전 점포 지역 1번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고소득 계층과 소비성향이 높은 20~30대 고객들을 겨냥한 백화점 본연의 상품 경쟁력 강화로 구매력 높은 우량고객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8년 회사는 5,112억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점 오픈, 복합시설개발 및 기존점 리뉴얼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투자재원은 내부 유보자금 및 다양한 조달방법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시내면세점과의 시너지로 글로벌 타운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본점은 2019년 상반기 본관 앞 분수대 오픈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SC & 메사 전문관 개발을 통한 ‘본점 타운화’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과 과학, 문화, 자연이 모두 어우러지는 ‘대전 충남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개발 예정인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2021년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고양 스타필드에서 첫 선을 보인 오프 프라이스 컨셉의 ‘팩토리 스토어’와 같은 뉴 포맷 스토어 또한 추가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들도 상권 고객 맞춤형 콘텐츠와 MD 리뉴얼을 통해 신세계의 ‘압도적 지역 1번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브랜드 비즈니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수한 가구 브랜드 ‘까사미아’는 현재 B2C 위주에서 홈 리모델링과 컨설팅, B2B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함과 동시에 그룹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세계 그룹 역량을 결집한 홈퍼니싱 비즈니스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계의 코스메틱 편집 브랜드 ‘시코르’는 백화점 입점 뿐 아니라 강남역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은 로드숍, 복합쇼핑몰로 출점을 늘리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캐시미어 브랜드 ‘델라라나’, 런제리 중심의 스타일 편집매장 ‘엘라코닉’, 지난해 세계 패션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 진출한 ‘분더샵’도 전략적 확장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닦아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나.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 연결손익계산서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연결자본변동표 · 연결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62(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7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2 기 2018.12.31 현재

제 61 기 2017.12.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기말 | | 제61(전)기말 | |
|-------------------|-------------------|-------------------|-------------------|-------------------|
| 자 산 | | | | |
| Ⅰ. 유 동 자 산 | | 485,187,604,970 | | 612,468,249,87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4,780,810,510 | | 111,149,343,267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9,678,129,576 | | 210,049,102,736 | |
| 재고자산 | 59,521,319,825 | | 68,661,289,921 | |
| 파생상품자산 | - | | 499,914,199 | |
| 기타금융자산 | 10,395,230,000 | | 180,368,376,141 | |
| 기타유동자산 | 20,812,115,059 | | 41,740,223,612 | |
| Ⅱ. 비 유 동 자 산 | | 5,604,513,757,752 | | 5,459,433,292,61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148,692,515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547,547,630,82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359,391,505,224 | |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2,241,992,773,994 | | 1,785,664,434,714 | |
| 유형자산 | 2,314,150,417,290 | | 2,417,363,571,178 | |
| 투자부동산 | 160,784,402,201 | | 161,811,674,488 | |
| 무형자산 | 27,657,444,793 | | 41,167,726,417 | |
| 파생상품자산 | 2,975,138,251 | | - | |
| 기타금융자산 | 187,448,019,039 | | 176,918,857,346 | |

| | | | | |
|---------------|-------------------|-------------------|-------------------|-------------------|
| 기타비유동자산 | 310,114,056,960 | | 328,810,705,132 | |
| 자 산 총 계 | | 6,089,701,362,722 | | 6,071,901,542,490 |
| 부 채 | | | | |
| Ⅰ. 유 동 부 채 | | 1,449,203,814,971 | | 2,029,087,841,64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35,130,419,489 | | 305,817,593,887 | |
| 상품권 | 432,510,529,165 | | 411,752,978,315 | |
| 단기차입금 | 199,985,540,241 | | 779,987,635,935 | |
| 당기법인세부채 | 30,804,510,680 | | 28,755,435,458 | |
| 기타금융부채 | 47,948,930,080 | | 53,868,958,187 | |
| 기타유동부채 | 402,823,885,316 | | 448,905,239,864 | |
| Ⅱ. 비 유 동 부 채 | | 1,500,299,131,269 | | 903,975,751,645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87,432,357 | | 2,229,484,477 | |
| 장기차입금 | 1,238,147,300,382 | | 578,918,556,678 | |
| 파생상품부채 | - | | 10,367,953,081 | |
| 순확정급여부채 | 19,177,709,949 | | 22,851,104,002 | |
| 이연법인세부채 | 90,080,568,792 | | 136,046,900,878 | |
| 기타금융부채 | 142,066,219,383 | | 141,238,498,060 | |
| 기타비유동부채 | 10,039,900,406 | | 12,323,254,469 | |
| 부 채 총 계 | | 2,949,502,946,240 | | 2,933,063,593,291 |
| 자 본 | | | | |
| 자본금 | 49,225,905,000 | | 49,225,905,000 | |
| 기타불입자본 | 365,835,929,932 | | 365,835,929,932 | |
| 신종자본증권 | 317,309,817,147 | | 317,309,817,147 | |
| 이익잉여금 | 2,137,582,842,060 | | 1,993,221,096,611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70,243,922,343 | | 413,245,200,509 | |
| 자 본 총 계 | | 3,140,198,416,482 | | 3,138,837,949,19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6,089,701,362,722 | | 6,071,901,542,490 |

②-1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6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6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기 | 제61(전)기 |
|----------|-------------------|-------------------|
| Ⅰ. 매출액 | 1,739,326,807,289 | 1,665,520,575,699 |
| Ⅱ. 매출원가 | 345,363,832,134 | 351,046,324,832 |
| Ⅲ. 매출총이익 | 1,393,962,975,155 | 1,314,474,250,867 |
| 판매비와 관리비 | 1,151,703,485,347 | 1,094,665,119,642 |
| Ⅳ. 영업이익 | 242,259,489,808 | 219,809,131,225 |

| | | |
|----------------|-----------------|-----------------|
| 금융이익 | 43,734,776,248 | 33,523,173,164 |
| 금융원가 | 47,341,627,212 | 86,061,174,903 |
| 기타영업외수익 | 19,905,429,933 | 48,766,081,872 |
| 기타영업외비용 | 13,804,952,924 | 28,603,286,906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4,753,115,853 | 187,433,924,452 |
| 법인세비용 | 57,998,256,753 | 45,331,984,243 |
| VI. 당기순이익 | 186,754,859,100 | 142,101,940,209 |
| VII. 주당이익 | | |
| 기본주당순이익 | 18,106 | 13,547 |
| 희석주당순이익 | 18,106 | 13,547 |

②-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6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6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기 | 제61(전)기 |
|---------------------------|-------------------|------------------|
| I. 당기순이익 | 186,754,859,100 | 142,101,940,209 |
| II. 기타포괄손익 | (158,447,148,649) | 29,783,736,48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58,068,213,687) | (11,919,964,6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 (188,156,125,599)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0,377,137,841) | (15,725,547,08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50,465,049,753 | 3,805,582,39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78,934,962) | 41,703,701,167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2,572,096,2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499,914,198) | 2,445,979,21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120,979,236 | (13,314,374,250)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28,307,710,451 | 171,885,676,689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2 기 (2018. 12.31 현재)

제 61 기 (2017.12.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 기말 | | 제61(전) 기말 | |
|---|------------------|-----------------|------------------|-----------------|
| I.미처분이익잉여금 | | 162,650,426,117 | | 121,332,838,022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2. 당기순이익 | 186,754,859,100 | | 142,101,940,209 |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445,870,483) | | (11,919,964,687) | |
| 4.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지급 | (8,658,562,500) | | (8,849,137,500) | |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 162,650,426,117 | | 121,332,838,022 |
| 1. 이익준비금 | - | | - | |
| 2. 사업확장적립금 | 142,977,612,117 | | 109,037,329,272 | |
| 3. 배당금 | 19,672,814,000 | | 12,295,508,750 | |
|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2,000원(40%) 전기: 1,250원(25%) | | |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6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6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 계 |
|---------------------|----------------|----------------|-----------------|-----------------|-------------------|-----------------|-------------------|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 |
| I. 2017.1.1(전기초) | 49,225,905,000 | 72,430,940,799 | 293,404,989,133 | 317,309,817,147 | 1,884,183,767,339 | 371,541,499,342 | 2,988,096,918,760 |
| 1. 연차배당 | - | - | - | - | (12,295,508,750) | - | (12,295,508,750) |
| 2. 총포괄손익 | - | - | - | - | 130,181,975,522 | 41,703,701,167 | 171,885,676,689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2,101,940,209 | - | 142,101,940,20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39,849,648,920 | 39,849,648,92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1,919,964,687) | - | (11,919,964,687)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 | 1,854,052,247 | 1,854,052,247 |
| 3.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8,849,137,500) | - | (8,849,137,500) |
| II. 2017.12.31(전기말) | 49,225,905,000 | 72,430,940,799 | 293,404,989,133 | 317,309,817,147 | 1,993,221,096,611 | 413,245,200,509 | 3,138,837,949,199 |
| III. 2018.1.1(당기초) | 49,225,905,000 | 72,430,940,799 | 293,404,989,133 | 317,309,817,147 | 1,993,221,096,611 | 413,245,200,509 | 3,138,837,949,199 |

| | | | | | | | |
|------------------------|----------------|----------------|-----------------|-----------------|-------------------|-------------------|-------------------|
|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 | - | - | - | (5,993,171,918) | - | (5,993,171,918) |
| 수정 후 재작성된 금액 | 49,225,905,000 | 72,430,940,799 | 293,404,989,133 | 317,309,817,147 | 1,987,227,924,693 | 413,245,200,509 | 3,132,844,777,281 |
| 1. 연차배당 | - | - | - | - | (12,295,508,750) | - | (12,295,508,750) |
| 2. 총포괄손익 | - | - | - | - | 171,308,988,617 | (143,001,278,166) | 28,307,710,451 |
| 당기순이익 | - | - | - | - | 186,754,859,100 | - | 186,754,859,1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142,622,343,204) | (142,622,343,20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445,870,483) | - | (15,445,870,483)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 | (378,934,962) | (378,934,962) |
| 3.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8,658,562,500) | - | (8,658,562,500) |
| IV. 2018.12.31(당기말) | 49,225,905,000 | 72,430,940,799 | 293,404,989,133 | 317,309,817,147 | 2,137,582,842,060 | 270,243,922,343 | 3,140,198,416,482 |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62 기 (2018. 01. 01 부터 2018. 12. 31 까지)

제 61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기 | | 제61(전)기 |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367,085,899,016 | | 310,826,084,61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437,257,209,197 | | 397,955,467,110 | |
| 이자수익의 수취 | 652,648,794 | | 518,140,424 | |
| 배당금의 수취 | 21,650,503,344 | | 17,677,284,337 | |
| 이자비용의 지급 | (43,162,909,679) | | (43,882,061,574) | |
| 법인세의 납부 | (49,311,552,640) | | (61,442,745,680)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320,687,056,890) | | (174,836,604,250)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00,000,000) | | (340,000,000)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 | | 200,0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14,412,592,550) | | (9,729,253,890) | |
| 보증금의 감소 | 202,979,055,129 | | 989,269,30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취득 | (45,000)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처분 | 42,001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45,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 97,356,016,322 | |
| 유형자산의 취득 | (67,427,025,656) | | (109,159,821,649) | |
| 유형자산의 처분 | 25,556,194,902 | | 30,987,913,420 | |
| 무형자산의 취득 | (1,397,313,874) | | (8,807,840,629) | |
| 무형자산의 처분 | 32,962,000 | | 4,502,310,480 | |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455,570,008,564) | | (168,085,152,612) | |

| | | | | |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24,878,480,061 | | - | |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 | | (12,750,000,000) | |
| 사업양도로 인한 현금유입 | 3,512,540,486 | | - | |
| 물적분할로 인한 현금유출 | (38,539,345,825)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57,232,625,117 | | (31,783,267,224)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 - | | (39,334,221,786)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00 | |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0) | | - | |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310,038,053) | | (289,896,268) | |
| 사채의 상환 | (300,000,000,000) | | (350,000,000,000) | |
| 사채의 발행 | 578,496,628,400 | | 378,984,520,000 | |
| 배당금의 지급 | (12,295,402,730) | | (12,294,531,67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8,658,562,500) | | (8,849,137,5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 | 103,631,467,243 | | 104,206,213,143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 111,149,343,267 | | 6,943,130,124 |
|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 214,780,810,510 | | 111,149,343,267 |

주석

제62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10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일로 하여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9년 2월 26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1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공시사항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개정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과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사의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아래 ② 참고).

경영진은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투자사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동 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회사채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 회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 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의 측정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한 금융상품은 계속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항목으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의 다른 재분류사항은 당사의 재무상태,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이나 총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ii)리스채권, iii)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 적용일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③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⑤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④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적용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점의 위험회피관계에 관한 재조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위험회피손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비금융항목의 최초 원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장부금액조정법). 이러한 대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의 재분류조정이 아니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존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중 장부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 위험회피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해당하였으며, 장부금액 조정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조정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최초 적용일(즉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비교표시되는 항목은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옵션의 공정가치 중 시간가치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지정되지 않은 옵션의 시간가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소급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주석 37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 관련 공시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사가 기존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했었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에 따라 재분류하거나 재분류하기로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최초 적용일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와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 |
|---------------------|-----------------|---------------------------|------------|----------------------------|------------|
| 구분 | 범주 | | 장부금액 | | |
| | 기준서 제1039호 | 기준서 제1109호 | 기준서 제1039호 |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추가손실 총당금인식액 | 기준서 제1109호 |
| 상장주식(주석7) (주1)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547,020 | - | 547,020 |
| 비상장주식(주석7) (주1)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528 | - | 528 |
| 이자율스왑자산 (주석16)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 500 | - | 500 |
| 통화스왑부채 (주석16)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 10,368 | - | 10,368 |
| 단기대여금 (주석8)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440 | - | 440 |
| 임차보증금 (주석8)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348,216 | - | 348,216 |
| 매출채권및 기타채권(주석6)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210,198 | - | 210,198 |
| 장단기금융상품 (주석8)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8,631 | - | 8,631 |
| 매입채무및 기타채무(주석15)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308,047 | - | 308,047 |
| 차입금 (주석17)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1,358,907 | - | 1,358,907 |
| 예수보증금 (주석19)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81,739 | - | 81,739 |
| 금융보증부채 (주석19)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447 | - | 447 |

(주1) 당사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전략적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제시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특정 사례를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범적인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규정의 내용 및 당사가 적용한 회계정책은 아래 '(8) 수익인식' 에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아니며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 | |
|-----------|-------------|---------|-----------|
| 구분 | 2018년 1월 1일 | | |
| | 변경전 | 조정사항 | 변경후 |
| 유동자산 | 612,468 | - | 612,468 |
| 비유동자산 | 5,459,434 | - | 5,459,434 |
| 자산계 | 6,071,902 | - | 6,071,902 |
| 유동부채 | 2,029,088 | 7,906 | 2,036,994 |
| 비유동부채 | 903,976 | (1,913) | 902,063 |
| 부채계 | 2,933,064 | 5,993 | 2,939,057 |
| 자본계 | 3,138,838 | (5,993) | 3,132,845 |

한편,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이 최초적용일 현재 자본의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이익잉여금 |
| 2017년 12월 31일(보고금액) | 1,993,221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최초적용 | |
| 고객충성제도 | (7,906) |
| 도입영향에 따른 법인세 효과 | 1,913 |
| 소 계 | (5,993) |
| 2018년 1월 1일(최초적용일) | 1,987,228 |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적용하는 방법(완전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수정소급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적용일인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 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며,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 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② 리스의 식별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리스의 정의는 주로 통제모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식별되는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 경우에 사용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당사는 동 기준서상 변경된 리스의 정의가 리스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계약의 범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ㄱ. 운용리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며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
-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서 원금(재무활동)과 이자(영업활동)로 구분하여 표시

동 기준서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을 대체합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 자산 리스(예: 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에 대해 리스료를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 금융리스

금융리스에서의 자산과 관련하여 동 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의 주된 차이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의 측정에서 발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 요구되었던 최대보증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하여 인식합니다. 최초 적용일에 당사는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리스자산을 사용권자산의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러한 변경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동 기준서 하에서도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서 계속 보유하는 모든 권리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한 공시사항이 변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중간리스제공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며, 전대리스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자산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당사는 일부 전대리스 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리스채권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자산은 제거되고 금융리스채권이 인식될 것이며, 이러한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해 관련 수익(금융이익으로 인식)의 인식시기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도상환특성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옵션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조기상환의 원인과 관계없이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손상규정 포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장부금액 조정사항(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피투자기업의 손실을 배분하거나 손상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기투자지분 장부금액의 조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기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5-2017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를 최초로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의 개정사항은 관련된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른 이후에도 특정 차입금의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일반차입금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제1103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기업이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측정 대상 이전보유지분은 공동영업과 관련하여 인식되지 않은 자산,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해야 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에 대한 개정사항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당사자가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업이 보유한 공동영업에 대한 이전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사항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를 결정할 때 갱신된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 전후에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고,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상태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산 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동 기준서는 제도의 개정(또는 축소 또는 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또는 정산손익) 인식 후에 결정되며,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측정과 관련된 문단이 개정되었습니다. 당사는 제도의 변경 후의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를 결정하기 위해 재측정에 사용된 갱신된 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순이자의 경우, 개정사항에서는 제도의 개정 이후 기간 동안의 순이자는 동 기준서 문단 99에 따라 재측정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여산정함을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대한 이번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도의 개정, 축소 및 정산에만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개정)

동 개정사항은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의 추가 공시'와 관련하여 문단 한129.1에서 언급하는 '계약'의 의미를 '개별 계약'으로 개정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공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종전의수익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한45.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용역계약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한129.1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수익 기준서에 비해 문단 한129.1에 따른 공시대상 계약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제정)

동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① 기업은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② 기업은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합니다.
 -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해석서를 완전소급법을 적용하거나 비교정보를 소급해서 재작성하지 않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 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6)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 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7)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 하여,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당사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주석 2.(9)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9)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 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 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30 ~ 60년 |
| 건축물 | 20 ~ 30년 |
| 인테리어 | 5년 |
| 기계장치 | 20 ~ 30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구기구비품 | 5년 |
| 임차시설개량권 | 11 ~ 50년 |
| 금융리스자산 | 5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경제적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30년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6)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원가는 개별법(미착품), 이동평균법(원·부재료 및 저장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매장상품)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 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 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최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인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29 참고).

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1, 32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40 참고).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32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32 참고).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32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경제적·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상기 3-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 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2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 · 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32 참고).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1, 32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2)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권리가 없거나 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재무상태표상 당사의 일괄상계약정에 따른 효과는 주석 37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 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외화 및 이자율위험과 관련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당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당사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전체(즉 선도요소 포함) 변동을 선도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관계 전체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예상거래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옵션계약을 이용하는 경우에 옵션의 내재가치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옵션의 공정가치 중 시간가치 변동(즉 지정되지 않은 요소)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당사는 옵션계약의 내재가치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즉 시간가치는 제외).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당사는 정액 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주석 37에서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이용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본 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의 변동 내역은 주석 26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 및 기타 적격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시점부터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현금흐름표 활동의 재분류

당기 현금흐름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현금흐름표의 일부 항목을 당기 현금흐름표의 활동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62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61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 기말 | | 제61(전) 기말 | |
|-------------------|-----------------|-------------------|-----------------|-------------------|
| 자 산 | | | | |
| I. 유 동 자 산 | | 1,846,357,052,769 | | 1,269,096,586,27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460,668,105 | | 175,486,926,579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37,989,917,694 | | 354,465,691,93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1,396,551 | | - | |
| 재고자산 | 916,491,380,976 | | 463,850,950,644 | |
| 파생상품자산 | 133,332,594 | | 499,914,199 | |
| 당기법인세자산 | 303,793,892 | | 17,450,539 | |
| 기타금융자산 | 42,599,856,639 | | 202,138,100,129 | |
| 기타유동자산 | 96,076,706,318 | | 72,637,552,242 | |
| II. 비 유 동 자 산 | | 9,253,196,418,952 | | 8,882,608,515,6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9,442,183,936 | | 547,547,630,824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321,616,331,332 | | 296,698,536,896 | |

| | | | | |
|------------------------|-------------------|--------------------|-------------------|--------------------|
| 유형자산 | 6,769,745,511,851 | | 6,632,152,317,855 | |
| 투자부동산 | 625,343,331,970 | | 609,055,172,642 | |
| 무형자산 | 423,451,696,454 | | 296,500,510,037 | |
| 파생상품자산 | 5,369,505,647 | | 383,467,214 | |
| 기타금융자산 | 400,780,157,758 | | 151,178,482,462 | |
| 기타비유동자산 | 331,125,664,245 | | 325,856,842,094 | |
| 이연법인세자산 | 16,322,035,759 | | 23,235,555,675 | |
| 자 산 총 계 | | 11,099,553,471,721 | | 10,151,705,101,969 |
| 부 채 | | | | |
| Ⅰ. 유 동 부 채 | | 3,254,297,596,549 | | 2,892,094,354,10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19,159,270,406 | | 420,199,799,247 | |
| 상품권 | 443,767,215,897 | | 411,752,978,315 | |
| 단기차입금 | 1,309,590,966,515 | | 1,250,768,769,620 | |
| 파생상품부채 | 390,351,550 | | 7,266,413,997 | |
| 당기법인세부채 | 51,368,721,236 | | 47,227,192,369 | |
| 총당부채 | 4,908,927,282 | | 2,700,688,409 | |
| 기타금융부채 | 179,921,270,477 | | 198,063,034,639 | |
| 기타유동부채 | 645,190,873,186 | | 554,115,477,512 | |
| Ⅱ. 비 유 동 부 채 | | 2,844,919,571,826 | | 2,340,083,956,46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186,301,114 | | 4,089,484,477 | |
| 장기차입금 | 1,857,871,135,882 | | 1,297,611,287,529 | |
| 파생상품부채 | 641,901,629 | | 12,586,062,667 | |
| 순확정급여부채 | 27,602,581,280 | | 25,474,575,304 | |
| 이연법인세부채 | 759,276,031,828 | | 804,838,239,454 | |
| 총당부채 | 8,735,676,187 | | 830,133,381 | |
| 기타금융부채 | 176,072,754,842 | | 179,249,035,282 | |
| 기타비유동부채 | 12,533,189,064 | | 15,405,138,370 | |
| 부 채 총 계 | | 6,099,217,168,375 | | 5,232,178,310,572 |
| 자 본 | | | |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 3,468,318,577,135 | | 3,421,762,778,247 |
| 자본금 | 49,225,905,000 | | 49,225,905,000 | |
| 기타불입자본 | 393,105,996,084 | | 395,926,483,564 | |
| 신종자본증권 | 317,309,817,147 | | 317,309,817,147 | |
| 이익잉여금 | 2,439,183,611,257 | | 2,245,960,928,035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69,493,247,647 | | 413,339,644,501 | |

| | | | | |
|---------------|--|--------------------|--|--------------------|
| II. 비지배지분 | | 1,532,017,726,211 | | 1,497,764,013,150 |
| 자 본 총 계 | | 5,000,336,303,346 | | 4,919,526,791,397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 11,099,553,471,721 | | 10,151,705,101,969 |

②-1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62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 기 | 제61(전) 기 |
|------------------------|-------------------|-------------------|
| I. 매출액 | 5,185,683,014,096 | 3,871,416,070,963 |
| II. 매출원가 | 2,291,608,530,774 | 1,559,361,691,867 |
| III. 매출총이익 | 2,894,074,483,322 | 2,312,054,379,096 |
| 판매비와 관리비 | 2,496,724,101,936 | 1,966,358,728,484 |
| IV. 영업이익 | 397,350,381,386 | 345,695,650,612 |
| 금융이익 | 56,984,062,401 | 49,568,796,289 |
| 금융원가 | 107,927,251,489 | 142,054,950,398 |
| 지분법투자이익 | 20,053,035,524 | 21,071,428,967 |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익 | 1,753,129 | - |
| 기타영업외수익 | 29,700,086,377 | 57,539,180,298 |
| 기타영업외비용 | 41,334,342,283 | 40,469,339,718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4,827,725,045 | 291,350,766,050 |
| 법인세비용 | 69,947,624,817 | 77,740,309,401 |
| VI. 당기순이익 | 284,880,100,228 | 213,610,456,649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38,978,198,022 | 182,266,248,137 |
| 비지배지분 | 45,901,902,206 | 31,344,208,512 |
| VII.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
| 기본주당순이익 | 23,415 | 18,530 |
| 희석주당순이익 | 23,415 | 18,530 |

②-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62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62(당) 기 | 제61(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284,880,100,228 | 213,610,456,649 |
| II. 기타포괄손익 | (163,903,219,921) | 25,500,096,86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61,889,212,398) | (16,989,307,8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188,227,664,798)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132,476,312) | (22,355,530,754)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51,470,928,712 | 5,366,222,93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014,007,523) | 42,489,404,693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52,572,096,201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2,091,375,274) | 3,245,450,111 |
| 지분법자본변동 | (394,762,183) | 134,563,26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29,515,330) | 77,705,637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601,645,264 | (13,540,410,517)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120,976,880,307 | 239,110,553,518 |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77,058,322,843 | 209,449,626,474 |
| 비지배지분 | 43,918,557,464 | 29,660,927,044 |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62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3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 | |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 |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 | | | |
| III. 2017. 1. 1(당기초) | 49,225,905,000 | 72,430,940,799 | 323,896,993,388 | 317,309,817,147 | 2,099,976,587,506 | 371,292,117,614 | 1,458,808,394,781 | 4,692,940,756,235 |
| 1. 연차배당 | - | - | - | - | (12,295,508,750) | - | (14,510,788,409) | (26,806,297,159) |

| | | | | | | | | | |
|------------------------------|----------------|----------------|-----------------|-----------------|-------------------|-------------------|-------------------|-------------------|---|
| 2.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 | - | - | - | - |
| 3.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2,405,786) | - | - | - | 25,803,855,452 | 25,801,449,666 | - |
| 4. 종속기업지분의 처분 | - | - | - | - | - | - | - | - | - |
| 5. 지분법이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273,112,808) | - | (173,340,555) | (446,453,363) | - |
| 5.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 (399,044,837) | - | - | - | (1,825,035,163) | (2,224,080,000) | - |
| 6. 연결범위변동 | - | - | - | - | - | - | - | - | - |
| 7. 총포괄손익 | - | - | - | - | 167,402,099,587 | 42,047,526,887 | 29,660,927,044 | 239,110,553,518 | - |
| 당기손이익 | - | - | - | - | 182,266,248,137 | - | 31,344,208,512 | 213,610,456,649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39,849,648,920 | - | 39,849,648,920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 | - | 2,131,372,298 | 328,678,886 | 2,460,051,184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35,105,214 | 66,893,738 | 101,998,952 |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 - | - | - | 31,400,455 | 46,305,182 | 77,705,637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4,864,148,550) | - | (2,125,159,274) | (16,989,307,824) | - |
| 8. 신종자본증권 | - | - | - | - | (8,849,137,500) | - | - | (8,849,137,500) | - |
| IV. 2017.12.31(당분기말) | 49,225,905,000 | 72,430,940,799 | 323,495,542,765 | 317,309,817,147 | 2,245,960,928,035 | 413,339,644,501 | 1,497,764,013,150 | 4,919,526,791,397 | - |
| III. 2018.1.1(당기초) | 49,225,905,000 | 72,430,940,799 | 323,495,542,765 | 317,309,817,147 | 2,245,960,928,035 | 413,339,644,501 | 1,497,764,013,150 | 4,919,526,791,397 | - |
|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 | - | - | - | (6,844,574,543) | - | (544,439,342) | (7,389,013,885) | - |
| 수정 후 재작성된 금액 | 49,225,905,000 | 72,430,940,799 | 323,495,542,765 | 317,309,817,147 | 2,239,116,353,492 | 413,339,644,501 | 1,497,219,573,808 | 4,912,137,777,512 | - |
| 1. 연차배당 | - | - | - | - | (12,295,508,750) | - | (12,871,634,361) | (25,167,143,111) | - |
| 2.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 | - | - | - | - |
| 3.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 | - | - | - | - | - |
| 4.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 (2,820,487,480) | - | - | - | (5,040,737,680) | (7,861,225,160) | - |
| 5. 지분법이이익잉여금변동 | - | - | - | - | - | - | - | - | - |
| 5.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 | - | - | - | - | - | - | - | - |
| 6. 연결범위변동 | - | - | - | - | - | - | 8,908,576,298 | 8,908,576,298 | - |
| 7. 총포괄손익 | - | - | - | - | 221,021,329,015 | (143,846,396,854) | 43,801,948,146 | 120,976,880,307 | - |
| 당기손이익 | - | - | - | - | 238,978,198,022 | - | 45,901,902,206 | 284,880,100,228 |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142,672,405,335) | (4,164,582) | (142,676,569,917) | - |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이자율스왑평가손익) | - | - | - | - | - | (928,449,148) | (656,813,310) | (1,585,262,458)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116,609,318 | (186,179,235) | (229,659,818) | (299,229,735) | - |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 | - | - | - | (59,363,136) | (70,152,194) | (129,515,330) |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8,073,478,325) | - | (1,139,164,156) | (19,212,642,481) | - |
| 8. 신종자본증권 | - | - | - | - | (8,658,562,500) | - | - | (8,658,562,500) | - |
| IV. 2018.12.31(당기말) | 49,225,905,000 | 72,430,940,799 | 320,675,055,285 | 317,309,817,147 | 2,439,183,611,257 | 269,493,247,647 | 1,532,017,726,211 | 5,000,336,303,346 | - |

④ 연결 현금흐름표

< 연결 현금흐름표 >

제62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1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신세계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62기 | 제61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728,179,643 | 357,355,145,85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52,001,926,580 | 507,298,464,826 |
| 이자수익의 수취 | 5,043,628,748 | 1,313,230,702 |
| 배당금의 수취 | 8,901,518,397 | 5,594,853,562 |

| | | | | |
|---------------------------------|----------------------|-------------------|----------------------|-------------------|
| 이자비용의 지급 | (66,473,680,510) | | (63,064,384,730) | |
| 법인세의 납부 | (52,745,213,572) | | (93,787,018,501)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359,548,377,518) | | (264,602,057,348)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33,858,043,344) | | (26,495,964,260)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19,018,093,538 | | 21,086,101,28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 | 306,655,500 | |
|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 (758,444,197) |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463,518,656,426) | | (395,582,447,665) | |
| 유형자산의 처분 | 73,486,617,250 | | 43,068,034,716 | |
| 토지취득세의 환급 | - | | 362,448,080 | |
| 건물취득세의 환급 | 19,903,831 | | -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960,000,000 |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7,928,951,984) | | (12,782,461,892) | |
| 무형자산의 처분 | 43,640,000 | | 9,472,530,177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401,835,900) | | (298,677,500)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1,799,699,999 | |
| 사업양도로 인한 유출 | - | | (22,859,979) | |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6,000,000,000) | | (15,250,000,000) |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유출) | (146,526,773,891) | | 12,090,617,174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45,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 97,356,016,32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6,450,326,405 | | - | |
| 파생상품의 정산 | (534,252,800) | | 288,295,70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451,311,689,060 | | 4,351,169,66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998,993,926,416 | | 3,767,788,968,616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472,502,090,043) | | (3,803,179,617,168)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0,000,000,000 | | 47,303,000,00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0) | | - | |
| 사채의 발행 | 675,044,120,847 | | 457,515,442,819 | |
| 사채의 상환 | (590,184,000,000) | | (445,000,000,000) | |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6,103,308,401) | | (7,997,746,604)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25,801,449,666 | |
| 종속기업지분의 추가취득 | 6,267,103,232 | | (2,224,080,000) | |
| 배당금의 지급 | (24,958,500,491) | | (26,807,110,169)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8,658,562,500) | | (8,849,137,500) | |
| 파생상품의 정산 | (26,587,000,000) | |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II+III) | 138,491,491,185 | | | 97,104,258,171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4,026,272,404 | | | 78,328,791,176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25,193,468) | | | 53,877,232 |
| VI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492,570,121 | | | 175,486,926,579 |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당사")는 1955년 12월 9일 주식회사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이어, 2001년 3월 16일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6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로 백화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백화점 9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온라인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198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 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19년 1월 31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9년 3월 1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동 기준서와 관련한 타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2) 금융자산의 손상 및 3)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를 최초적용할 때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 및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기 이외의 모든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 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 중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채무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이 제거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된 누적손익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은 손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은 최초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금융자산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채무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 모두가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채무상품은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제거되거나 재분류될 때까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였던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단기매매항목도 아니고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조건부대가도 아님)는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평가손익누계액으로 계속 인식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던 만기보유금융자산이나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로만 구성된 현금흐름을 가진 금융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계속 당기손익_공정가치항목으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마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와 달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반드시 신용사건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실체는 i)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ii) 리스채권, iii) 계약자산과 iv)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이 적용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 동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금융상품 최초 인식일의 신용위험을 결정하고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신용위험과 비교함에 있어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최초적용일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손상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

라 추가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은 없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주요변경 중 하나는 발행자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연결실체는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금융부채 분류의 변경내용은 주석 마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 일반위험회피회계

새로운 일반위험회피회계 모형은 세가지 위험회피회계 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거래유형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유형과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효과 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경제적 관계' 원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위험회피효과의 소급적 평가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공시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연결실체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및 스왑계약의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연결실체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존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재분류 대상은 없으며,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재분류하도록 선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도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연결실체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적용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동 기준서를 소급적용하며, 최초 적용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 변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수정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객충성제도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초과할인권을 부여하여 향후구매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합니다. 동 초과할인권은 일반 고객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할인 혜택입니다. 따라서 우수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와 초과할인권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초과할인권의 개별판매가격은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에 따라 우수고객이 상품구매 시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상품구매 시점에 초과할인권과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초과할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상품구매를 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할인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나.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구매 후 일정기간 내 반품할 수 있는 고객의 권리와 관련하여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며, 동 환불부채에 상응하여 수익인식금액이 조정됩니다. 반환재고회수권은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하면 연결실체가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나타내며, 연결실체는 반품수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 경험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기댓값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동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 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예비적인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리스계약들은 동 기준서 하에서 리스의 정의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결실체가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할것입니다. 사용권자산 및 관련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동 기준서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연결실체는 동 기준서의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연결실체는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금융리스 및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및 금융리스)는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
|---|---|
|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예)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
| -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 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

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
|---|----------------------------------|
|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

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 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9)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하여, 최초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연결실체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채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

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 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

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20 ~ 60년 |
| 건축물 | 10 ~ 40년 |
| 인테리어 | 5 ~ 8년 |
| 기계장치 | 5 ~ 30년 |
| 차량운반구 | 5년 |
| 공구기구비품 | 5 ~ 10년 |
| 임차시설개량권 | 11 ~ 4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경제적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용연수 |
|-----|----------|
| 건물 | 20 ~ 50년 |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원가는 개별법(미착품), 이동평균법(원·부재료, 저장품, 제품, 상품 및 재공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매장상품)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0) 총당부채

총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 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 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 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 득자의 조건부대がい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 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
|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
|---|-------------------------------------|
|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
|---|---|
|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
|---|---|
|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
|---|---|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
|-----|--|
|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

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으로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5)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

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장재영 | 1960년 11월 24일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 안영호 | 1954년 11월 3일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 원정희 | 1959년 1월 17일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 위철환 | 1958년 2월 17일 | 사외이사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 총 (4)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 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장재영 | (주)신세계 대표이사 | - 現 (주)신세계 대표이사 - 前 (주)신세계 판매본부장 부사장 | 없음 |
| 안영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없음 |
| 원정희 | 법무법인 광장 고문 | -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 없음 |
| 위철환 | 동수원 종합법무법인 변호사 | - 現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없음 |

※ 상기 후보자 중 안영호 사외이사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아닌 고문으로 재직 중이나 당사와 법무법인 김앤장과의 거래는 소송관련 1건, 기타자문 2건이 있었고 동거래에 대하여 안영호 후보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안영호 | 1954년 11월 3일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원정희 | 1959년 1월 17일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 총 (2) 명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안영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 -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위원 | 없음 |
| 원정희 | 법무법인 광장 고문 | -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2019~) -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 없음 |

※ 상기 후보자 중 안영호 사외이사 후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가 아닌 고문으로 재직 중이나 당사와 법무법인 김앤장과의 거래는 소송관련 1건, 기타자문 2건이 있었고 동거래에 대하여 안영호 후보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p>제 8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p> | <p>제 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 <p>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p> |
| <p>제 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본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리사무 등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 <p>제 12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좌 동> ② <좌 동> ③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좌 동></p> | <p>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p> |
| <p>제 13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 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본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p> | <p>제 13조 <삭 제></p> | <p>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p> |

| | | |
|---|---|--|
| <p>제 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본 회사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p> <p>②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p> <p>③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p> | <p>제 14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①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p> <p>② <좌 동></p> <p>③ (좌 동)</p> | <p>①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른 주식 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p> |
| <p>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 <p>제 15 조 (사채의 발행) ① (좌동)</p> <p>② (좌동)</p> <p>③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 |
| <p><신 설></p> | <p>제16조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 <p>주식 등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p> |

| | | |
|--|--|-----------------------------------|
| <p>제 33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p> | <p>제 33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좌동)</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간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좌동)</p> | <p>상법 제390조를 반영하여 이사회 소집일정 변경</p> |
|--|--|-----------------------------------|

| | | |
|---|--|-----------------------------|
| <p>제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①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⑥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p> <p>⑦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p> <p>⑧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 <p>제38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p> <p>① <좌 동></p> <p>②<좌 동></p> <p>③<좌 동></p> <p>④<좌 동></p> <p>⑤<좌 동></p> <p>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p> <p>⑦<좌 동></p> <p>⑧<좌 동></p> | <p>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 반영</p> |
| <p>제 7 장 부 칙</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p> | <p>제 7 장 부 칙</p> <p>① 이 정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 2 개정내용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7 (4) | 7 (4)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억원 | 100억원 |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19년 3월 5일 ~ 2019년 3월 14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19년 3월 15일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